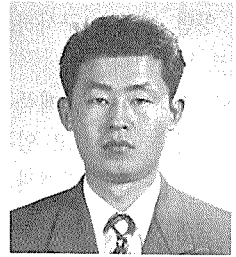


가전제품의 예치금제도 개선방안



송 호 택
본회 환경과

1. 머리말

전자산업 특히 가전산업은 무공해산업, 기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천연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찌기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자리잡아 과거 수십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명실공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여 왔다는 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소비의 다양화 대량화 현상이 가속화 됨에 따라 생활 필수품인 가전제품 역시 가구당 복수보유 및 보급팽창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로인해 발생되는 폐기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폐기물의 사전 발생억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제조업체 차원에서 그 해결방안을 구하고자 하는 “폐기물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가 그중의 하나이다.

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제도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제도로써 처음 시행한 '92년도 부터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환경보전의 명분을 내세우는 정부와 산업보호 및 실효성 있는 회수처리 제도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계 간 반목이 심화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쌍방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그간의 우리나라 폐가전품 회수처리제도의 운용 결과 밝혀진 문제점과 전자업계의 자구 노력을 중심으로 환경 및 경제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하여 모색해 본다.

2. 가전제품과 예치금제도

1) 예치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치금제도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 배출되는 품목에 대해 새로이 제조 판매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폐기시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업체로 하여금 사전에 예치케 한 후 회수처리 실적에 따라 반환해주는 제도로서 '95년 현재 5개종 12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TV, 세탁기, 에어컨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92년 말부터 지금까지 가전3사가 환경부에 납부한 예치금은 총 22,087백만원이었고, 반환받은 예치금은 471백만원이며 적절하게 반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치금은 21,616백만원

예치금 납부/반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93	'94	'95	'96	합 계	비 고
납부액	3,592	3,491	5,015	4,989	5,000	22,087	미반환예치금 : 21,616
반환액	-	1	35	155	280	471	

으로 그 반환율은 실제 약 0.6%에 그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예치금 반환율이 저조한 것은 예치금 요율이 폐기물의 실제 회수처리비용보다 훨씬 낮아 제조자의 회수동기가 없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치금 요율을 인상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치금 제도 시행초에는 TV, 세탁기를 선정하였으나 '93년에는 에어컨을 추가하는 등 법 시행령 개정시마다 품목 추가 및 요율인상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의 원만한 회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예치금 요율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가전제품은 예치금 대상 품목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즉 본래의 예치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품목을 지정, 시행한 결과이다.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내구소비재로서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으로 소비 Cycle이 길고 제품 자체가 철, 비철금속 및 여러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ABS, PS, PU)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PET 병, 금속캔 등 다른 예치금 품목처럼 단일물질로 분리분해 후 동

일 제품으로 재사용, 재활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치금 대상품목의 기본취지인 “회수, 재활용이 용이한” 품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빈병이나 금속캔처럼 단기간에 소비되어 폐기 수거되면 세척 재련 등 비교적 간단한 물리적 과정을 거쳐 신제품으로 재사용 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와 제조자간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둘째, 가전제품을 포함한 대형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위한 사회적 접자본(SOC)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전제품은 다양한 재질과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재활용 주체는 가전업체가 아닌 제강업 또는 2차 원료산업이다.

바꾸어 말하면 가전제품은 제조자의 회수동기가 없어 가전업체에 의한 회수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어렵고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별로 환경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단계로 예치금제도가 부담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원활한 회수처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예치금제도를 통해 폐기물의 광역집하장, 처리장 건립 등 지역이거주

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힘이 부치는 업무를 제조업체에 전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의욕만 앞섰을 뿐 폐기물의 회수처리에는 실효성을 거둘수 없다.

마지막으로, 폐가전제품의 회수 처리제도가 중복되어 운용되는 점이다.

'95.1월부터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의해 가전제품을 포함한 대형 생활쓰레기 21개 품목에 대하여 배출자(최종소비자)들이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배출수수료(2,000~15,000원)를 부담하면 이를 시, 군, 구청에서 회수처리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그중 하나이고, TV, 세탁기, 에어컨 3개 품목의 강제회수처리 유인정책인 예치금 제도가 그 하나이다.

이 두 제도가 중복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재활용 주체가 가전업체의 용역업체와 자치단체의 용역업체 등으로 분리되어 경제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의 폐기시 회수처리 비용을 이중부담하는 결과를 빚고 있어 시급한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사실상 이러한 세가지의 요인이 폐가전제품의 원활한 회수처리를 저해하고 따라서 예치금의 반환실적을 저조케 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자의 예치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귀속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는 계속 불어만 나고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외면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2) 가전업계의 회수처리 노력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전업계는 폐가전품으로 인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활용전문업체를 발굴, 육성해 그들 업체들로 하여금 “폐가전품 회수처리, 재활용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93년도에 서울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폐가전품 위탁처리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참고2. 그동안의 회수처리체계와 실적〉

○ 시범사업('93.5~'94.6)

－ 회수 : 판매대리점이 1차수거, 재활용전문업체가 판매대리점 순회 2차수거

－ 처리 : 재활용전문업체가 수작업에 의해 분리분해 재활용

－ 실적 : 59천대(세탁기 19천대, 냉장고 40천대, TV80대)

○ 전국사업('94.8~'95.6)

－ 회수 : 제품 역판매망을 이용한 회수체계 전국 확대

－ 처리 : 재활용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작업, 기계화 병행

－ 실적 : 271천대(세탁기 127천대, 냉장고 114천대, TV30천대)

○ 가전업체별 확대 사업('95.7~'95.12)

－ 회수 : 역판매망 회수 강화, 물류센타는 중간집하장 역할 수행

－ 처리 : 재활용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수작업 및 기계화 병행

가전업계 공동사업 내용

구분	시기	사업내용
1단계	'96~'97	－ 폐가전 재활용·처리공정 수작업체계(자동화 병행 추진) · 냉장고 단열재 재활용 · 프레온가스(CFC) 회수 재활용
2단계	'98~2000	－ 폐가전(잔재물) 재활용 자동화시스템 구축

－ 실적 : 341천대(세탁기 160천대, 냉장고 150천대, TV31천대)

가전업계는 '96~2000년까지 “폐가전품 회수처리 공동사업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는 시점에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폐가전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 소비자 편의 도모 및 급증하는 수입제품에 맞서 서비스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완벽한 재활용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인데 이를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약 6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가전업계 단독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사업부지 제공이라든가 정부의 재활용 설비 자금의 지원 등 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가전제품의 예치금제도 개선 방안

'95년 2월 제72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가전제품이 직접 재활

용이 어렵고 소비Cycle이 긴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바 있으나, 최근(5.31) 환경부에서는 임의로 예치금 요율을 160~300%가량 인상할 것과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냉장고를 추가 포함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활용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인상안에 따르면 가전업계가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의 실질인상률은 약 460%에 이르는데, 요즘 가전산업의 극심한 수출부진과 국내시장 침체를 감안한다면 제품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또한 해외 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채산성 악화, 기업경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은 국내시장의 공동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전업계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폐가전품 회수 재활용사업에 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계로서는 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예치금 명목으로 또 막대한 비용을 납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예치금의 인상 조치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탁기, 에어컨의 재활용률

구 분	합 계	재활용가능부품				기타부품	
		소 계	고철류	수지류	모 터		
에어콘	중 량 (kg)	62.0	60.7	43.1	5.6	12.0	1.3
	구성비율 (%)	100	98	70	9	19	2
세탁기	중 량 (kg)	52.3	51.6	27.9	15.7	8.0	0.7
	구성비율 (%)	100	98	53	30	15	2

이제는 정부와 제조자가 어떠한 형식이나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힘을 합쳐 실제로 폐가전품이 회수 재활용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라고 보며, 가전업계의 성공적인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치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선, 가전제품은 예치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예치금 대상품목은 유해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폐기물로 다량 발생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나, 세탁기의 경우 환경유해물질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고 재활용 가치가 95% 이상이기 때문에 재활용 전문업체에서 재활용시 영업이익을 빼고도 이익이 되는 품목으로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부적절하며, 에어컨은 '92년 당시 냉장고가 여러가지 기금을 납부하는 점을 고려, 그 대신 포함된 품목으로 보급률도 상당히 낮고('95년 15.9%) 재활용가치가 높아 대부분 중고 재활용업자들이 수집해 가고 있어 가전업체로서도 그 회수가 어려운 실정으므로, 세탁기와 에어컨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CFC나 CRT 등 환경유해성 소지

가 있는 냉장고와 TV는 부담금 대상품목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과금의 부과기준은 “과거판매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가전제품은 내구소비재로서의 특성상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은 내용연수(평균 9~10년)가 지난 후의 제품인데도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다른 1회성제품과 같이 “전년도제품출고실적”을 기준으로 산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로 인해 '95년의 경우 발생하는 폐가전품에 비해 중량/수량적으로 평균 250~300% 이상 부당하게 많은 비용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가전제품의 부과기준은 내구연수(냉장고 10년, TV10년)를 감안한 과거판매실적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셋째, 부과 요율은 최소화 또는 동결해야 한다.

현재 가전제품에 부과하는 간접세의 제세율이 특소세 등을 포함 24.3~52.9%에 이르고 준조세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 14가지가 중과되고 있어 경쟁국

제품(일본 3%, 미국 4~9%, 대만 13%)에 비하면 경쟁력이 없는 실정에서 요율의 인상은 국내 제품에 악영향을 끼칠것이 분명하고 또 가전업계의 폐가전품 처리 공동사업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부과금의 기준으로 삼고있는 실제수처리비용의 결정은 현재 가전업계가 위탁중인 재활용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비용을 수용하고 요율은 최근 가전산업의 어려움과 업계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최소화 또는 동결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가전제품의 부과금은 환경 인프라 구축에 지원되어야 한다.

가전제품의 부과금은 실제 폐기물의 처리 재활용을 위해 조성되는 광역집하장, 최종처리장 등 환경 인프라 구축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가전 뿐만 아니라 업종별 사업자가 공동으로 회수 재활용사업 시행시에는 그 회수처리체계가 구축될때까지는 사업에 소용되는 막대한 투자를 감안, 요율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회수처리체계를 구축시 회수처리 목표를 정하여 이의 달성시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하는 투명성있는 제도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3. 맺는말

제조업체 본연의 의무는 친환경 제품 개발, 환경 관련 R&D 확대, 청정기술개발 등이며, 폐기물

'96 폐가전품 실회수처리비용

(단위 : 원)

구 분	T	V	세탁기	냉장고
회수비용	1,000		2,500	3,000
처리비용(위탁)	2,000		3,000	7,500
제생가치	2,111		4,266	6,190
총비용소계	899		1,234	4,310
kg당비용	47		28	60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처리·재활용 시설이나 최종 처분장의 정비에 충실하고 특히 소비자에 대한 계몽사업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적정 처리비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의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제품 장기사용에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주체별 임무에 충실한 가운데 제조업체가 완벽한 회수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해야만 폐가전품으로 인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판단된다.

의 회수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치금제도에 의해 각 업종별로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 이중삼중의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되는 한편 효과적인 회수처리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폐가전품에 관한 모든 회수처리의 책임을 지방자치

단체에 전가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제조업체, 판매자, 소비자 등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해야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RECYCLE형 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세제 정비와 환경인프라 구축에 집중 노력해야 하며 재활용산업의 육성책을

용어해설

3D, SRS, CCFE

3D(Dimension) 가속기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특정 객체에 질감과 원근감을 부여하여 입체감이 느껴지게 하는 기술이다. 별도의 전용 안경을 이용하여 입체감이 느껴지게 하는 가상현실과는 다른 기술임

SRS(Sound Retrieval System) 별도의 서라운드 스피커 없이도 생동감 넘치는 자연음을 낸다. SRS는 음의 강도 및 시간차 등에 변화를 주어 입체음을 만드는 것으로 향후 사운드

효과기술의 표준으로 예상된다.

CCFE(Colsed Caption For Education) 기존의 청각장애자용 캡션규격을 확장하여 영어, 일어 등 외국어학습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한 교육용 비디오 CD규격이다. 삼보가 채택한 CCFE기술은 교육용 비디오 CD플레이어 기능외에 영어/한글 단어검색 기능, 가전기능, 구간반복 재생기능, 중요 속어 표시 및 해설기능 등이 수록되어 있다. CCFE의 장점은 학습

시간의 제약이 없고 비용절감 면에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지겨운 어학 교육을 흥미롭게 진행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T.T.S(Text To Sound)문자로 쓰여진 데이터를 컴퓨터가 음성으로 읽어주는 최첨단 기술로 드림시스 II는 일정관리 프로그램인 스케줄러와 팩스맨프로의 메시지를 컴퓨터가 직접 읽어준다.